■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7. 23.>

수입식품등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 [] 외화획득용 원료)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수입신고인)	상호		성명
	주소		
신청정보 (수입식품등)	제품구분	1: 농·임·수산물 [] 2: 축산물 [] 3: 가공식품 [] 4: 식품첨가물 [] 5: 기구 또는 용기·포장 []	발급번호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 (수입신고확인증)
	제품명		제품유형
	신고수량 (단위:)		용도변경수량 (단위:)
	신고중량 (단위:kg)		용도변경중량 (단위:kg)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승인 전	승인 후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용도변경 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물량에 대한 계약서 사본 2. 제1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인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합니다)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른 정밀검사[별표 10 제1호가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정합니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나. 외화획득용 원료인 경우: 해당 원료를 사용하려는 영업자의 수출계획서 4.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